

의안번호	2218809
의 퇴 인	송옥주 의원
회 답 일	2026. 6. 30.
추 계 번호	26C247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2조(정의)	의사자의 범위에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의상자의 범위에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포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안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보상금 지급 대상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대상자에 의사상자 외에 “구조행위자”를 포함함 ※ (안 제2조제7호) “구조행위자”란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안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에, 국가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에 포함할 경우, 기존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자와 의상자 외 구조행위자에게도 보상금 및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실시할 경우에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의사자·의상자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호,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받고 있음
 - (현행법상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현행법상 의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이 될 사람의 수와 지원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의사자와 의상자 모두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 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신적 손상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신규 지원 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현행법 제9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조행위자에 대한 지급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